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2025-053호

「2025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재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도내 협동조합 협업모델 발굴·육성을 통한 규모화 실현을 위한 **「2025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25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간 협업모델 발굴·육성을 통한 규모화로 도내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기반 마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0. 31.(금)

○ **(모집규모)** 협동조합 협업모델(컨소시엄) **6개팀 내외**

○ **(모집내용)**

사업 내용	협동조합간 및 협동조합과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공동의 사업화를 통해 협업모델을 구축 사업화 자금지원(컨소시엄 단위모집)
예시	(공동 상품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컨소시엄 구성조직의 역량과 자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업을 통한 사업화 추진 **(예시1)** 기술(AI, IT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장애인 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플랫폼 시스템 구축 **(예시2)** 고령화 도시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을 위한 이동차량-노인돌봄 협업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예시3)** 고물가 시대, 결식아동 및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분야 협동조합-돌봄 협동조합 간의 협업 **(예시4)**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복귀를 위한 교육 협동조합-카페 협동조합 협업을 통한 자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시5)** 지역 아동 돌봄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제작 협동조합-돌봄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업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발

○ (모집자격)

사업구분	자격사항
협업화 지원	☑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주관 컨소시엄 또는 (동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 단독·(또는)주관 컨소시엄 - (동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단독 참여 및 컨소시엄 모두 가능 - 사업의 주관기업은 **'기본법 협동조합'만 가능**하며, 개별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참여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전체 참여기업 수의 50% 이상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참여불가 예시)협동조합 1개·사회적기업 2개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에도 협업화 지원사업 타 컨소시엄에 중복참여 불가
참여불가 대상	**(전년도 참여기업 참여 불가)** - 2024년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참여 불가 **(중복참여불가)** - 2025년도 협동조합 내실화, 고도화 사업 선정기업 중복참여 불가 -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타 지원사업 선정기업(사업화지원금 직접지원기업)의 경우 중복참여 불가** (단, 타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이 아닌 참여기업의 경우는 가능) (단,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개방형혁신 지원사업, 임팩트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예외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사업 내용일 경우 지원 불가)

※ 참고사항

① 기본법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동종·이종)협동조합 연합회

② 개별법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기타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 중인 협동조합 및 연합회·중앙회

③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지원규모)

지원규모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지원	협동조합 협업모델 구축 사업개발자금 지원 **컨소시엄당 30,000천원 / 6개팀** *협업모델 구축에 필요한 직접적인 소요 예산 *인건비 지급 가능(사업비 10% 이내) - 주관기업 소속(내부전담인력)에 한하여 지급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공통] ① 사전진단컨설팅 2회(4월중) - 참여기업의 아이템을 정교화(사업모델점검)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② 중간점검컨설팅 1회(7월중) - 협업모델 사업추진 상태 및 방향성 중간 점검 ③ 사후진단컨설팅 1회(10월중) - 사업 효과성 진단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접근전략 도출 *참여기업 선정완료 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팩트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컨설팅 실시
역량강화 지원	참여기업(고도화협업화 선정기업)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집체교육/3회)

※ 부가가치세 미지원(발생 시 자부담), 별도의 자부담 없음
※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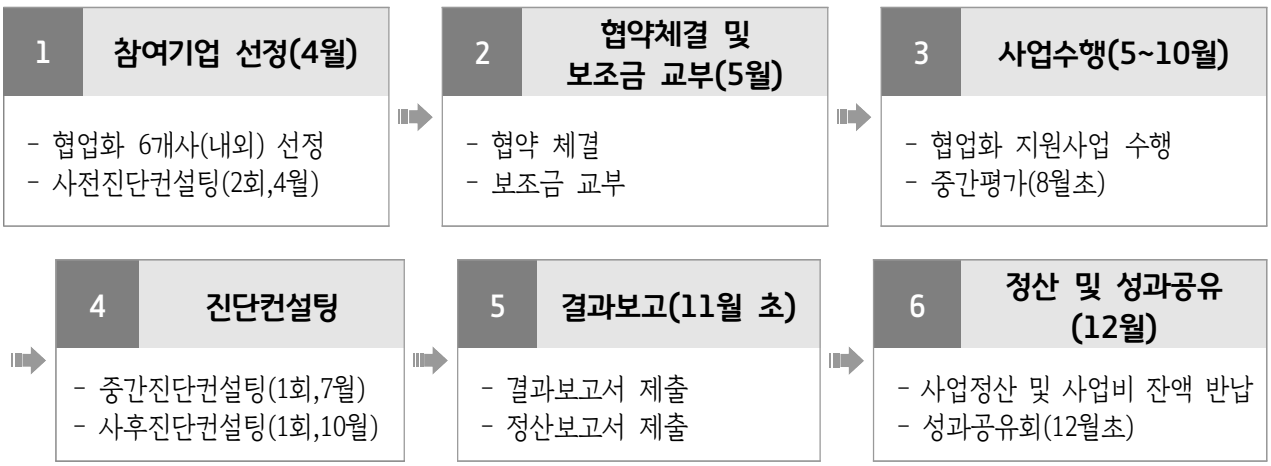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3. 25.(화) ~ **4. 7.(월) 16:00**

○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 사업신청

- https://www.gsic.or.kr/home/kor/M232113179/business/apply/index.do
- 신청마감 시각에 임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신청서 제

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있게 신청서 제출바람
- 기한내 신청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순번	**항목**
①	[서식 1] 지원신청서(협업화) 1부
②	[서식 2] 사업계획서(협업화) 1부
③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자, 실무자 모두)
④	[서식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⑤	[서식 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각 1부
⑥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설립인가증)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1부
⑧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⑨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2023,2024년)* 각 1부 *2024년 설립기업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⑪	대면심사 발표자료(PPT)
- 『제출서류 ①~⑤의 경우』 지정된 신청 서식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을 사용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 ⑦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서류 ⑨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만 인정 - 『제출서류 ③~⑤, ⑥~⑨의 경우』 주관 협의체, 컨소시엄 협의체 모두 각 1부씩 제출 필수 - 서명 및 날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진행하며, 서명 및 날인 누락 시 접수 불가 **- ①~②, ③~⑤, ⑥~⑩, ⑪ 서류(PDF)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압축(ZIP) 파일로 제출(업로드)**	

3.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자격조건은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부 관리 기준에 따름

○ 사업신청서, 월별·최종결과 및 정산보고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각종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중단·환수를 진행할 수 있음

○ 월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사용은 <u>중간평가 전까지 사업비 총액의 최대 70%까지 사용 가능함</u>

이에 따라, 사업계획 및 정량·정성 목표 또한 이러한 사업비 신청 **일정에 맞춰 수립**이 되어야 함

- 8월 초 **중간평가 실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중에 따라 사업비 환수조치 또는 **협약해지**를 진행함
- 사업 중도포기 및 각종 부적합 판단에 따른 환수조치 진행 시 심사 결과에 따른 후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함
-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체결한 협약서·보조금 관리 기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계획한 사업목표 달성률 및 보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
- 「2025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의 사전/중간/사후진단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성과공유회, 정기 보고자료 제출 등에 빠짐없이 성실히 임해야 함
- 기업의 단순 변심 혹은 귀책 사유로 사업 중도포기·중단 및 환수사례 발생 시, 향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사업 참여 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추진은 가능하나, 약정체결일 전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 **사후보전 방식 불가**

4. 선정절차 및 내용

○ (선정절차) 적격여부 검토 → 1차 서면심사 → 2차 대면심사 → 최종 선정

절 차	내 용
적격여부 검토	• 1차 서류심사 전, 지원 자격 및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 등 기본사항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검토(경기도사회적경제원)
1차 서류심사	• 심사일정: 2025년 4월 8일(화) ~ 4월 9일(수)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발표일정: 2025년 4월 10일(목) 결과발표 • 발표방법: 개별 통보 - 서류심사 결과 토대로 대면심사 대상 선정(모집규모의 1.5배수 내외)
2차 대면심사	• 심사일정: 2025년 4월 11(금) 14:00~ (예정) • 심사내용: 심사기준 참조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심사 • 발표방식: **제안 PT발표(질의응답 시간 포함) 20분** • 선정기준: 대면심사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 심사 시 합산 평균 70점 미만 기업의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동점 시 심사위원 내부 협의를 통하여 선정 • 심사장소: 추후 확정 안내 - 1차 서류심사 합격 기업에 한해 대면심사 시간 및 장소 개별 공지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정: 2025년 4월 14일(월) 결과발표(예정) • 발표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보(공문통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기준

○ **(협업화지원)** 선정평가 심사기준(안)

항목	세부 심사기준		배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구체성	• 사업목적 부합성 및 협업 필요성	10	30점
	• 사업 성과목표의 측정가능성 및 달성가능성	10	
	• 사업 예산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의 적합성·타당성	• 컨소시엄 구성 역량보유(인력, 네트워크, 경험, 자원 등)	10	30점
	• 협업 주체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적절성	10	
	• 사업수행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10	
기업의 잠재성	• 협업 사업모델의 지속성장 가능성	10	20점
	• 협업 모델의 차별성 및 혁신 노력	10	
사회적가치 확산 노력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창출 노력도	10	20점
	• 지역사회내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기여도	10	
합 계			100점

※ 최종 심사 시, 합산 평균 70점 미만의 경우 선정하지 않음

6. 평가 제외대상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제외 업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등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이미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7. 사업비 교부절차

○ (교부절차)

1 선정결과 통지	2 최종계획서 제출	3 협약 체결	4 보조금교부
선정결과 및 향후일정 안내(공문)	사전진단컨설팅 2회 (4/17~4/30)완료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4. 14.(월)	~ 5. 2.(금)	~5. 9.(금)	~5. 16.(금)

5 중간정산 및 평가	6 사업수행 종료	7 결과보고 및 정산	8 사업비 반납
1차 사업평가 (지출 증빙자료 포함) 및 2차 사업비 교부	협약종료에 따른 사업 수행 종료	전체 사업비 정산 (최종결과보고 내 포함)	보조금 외부회계정산 완료 후
8월 초	10. 31.(금)	~12. 12.(금)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신청 시 유의사항)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보조금 신청 시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하며 보조금 신청 전 **필수로 전용계좌(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통장)를 신규개설**하여야 함

  ※ 기존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전용통장 신규 개설 필요

- 기존 이용하던 보조금 전용 통장(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통장) 사용 시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신청은 지출건별 보조금시스템 신청 후 사경원 담당자의 승인완료 후 집행이 가능함
- **(사업비 교부서류)** 공문, 교부신청서, 최종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 및 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

8. 사업예산 분류 및 내용

○ 사업예산계획 수립 시, 아래의 **예산 분류(비목)에 따라 사업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예산 분류 외 항목 책정 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 상 예산 항목 선택 문의는 사전 문의

○ 월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사용은 **중간평가(8월초)전까지 사업비 총액의 최대 70%까지 사용 가능함**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설명
일반 인건비 **(사업비의 10% 이내)**	**전담인력 인건비**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의 전담인력 인건비 (근로형태 관계없음)
자문성 인건비 (외부전문가 한정, 사업비의 10% 이내)	**컨설팅비**	외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시 지급하는 수당
	자문비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시 지급하는 수당
	강사비	외부 전문 강사로부터 강의를 받을 시 지급하는 수당
일반수용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단기성 임차비용 예) 장비, 작업장, 행사장
	재료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용역비	직접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용역비
	사무용품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 비용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홍보성 비용, 책자·팜플렛 제작 등
	회의비	다과 및 식사를 포함한 회의 식대 1인 1식 기준 단가 15천원, 단순 다과구입은 1인 1식 기준 단가 7천원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사용 불가)

○ **(일반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협업화지원'만 해당)**

- 사업 전담인력(행정 업무) 인건비의 **합계**는 **'전체 교부 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책정 및 집행 가능

※ 총괄PM은 전담인력과 겸임 불가
※ 전담인력, 총괄PM은 주관 협동조합 소속 내부인력만 참여 가능

○ (자문성 인건비) 컨설팅비, 강사비

- 자문성 인건비의 **합계**는 **'전체 교부 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책정 및 집행 가능
- **(강사비 지급 기준)** 일반강의·교육(단일행사 또는 전문가 일회성 특강 등)

※ **협업모델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받는 교육·컨설팅을 의미**

※ **컨소시엄 내부 구성원이 사업내용으로 외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는 미해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전·현직4급(서기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 전·현직 5급(사무관)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 **(자문·컨설팅비 지급기준)** 협업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컨설팅을 위한 수당
  - 자문·컨설팅은 1일/1회 최대 3시간, 시간당 10만원 지급 가능
  - 컨설턴트 1일/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지급 가능

9. 사업보고

○ 월간 보고

- 제출일시: 매월 5일(7월은 중간평가로 제외함)
- 내용: 월별(전월) 추진보고서 제출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점검

○ 중간 보고

- 제출일시: 7월말 (8월초 중간평가 실시예정)
- 내용: 사업별 추진현황 및 성과목표 달성도 및 보조금 이행 적절성
  ※중간 보고 및 평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 판단

○ 최종 보고

- 시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11. 10.(월))
- 내용: 사업계획 대비 집행 내용, 성과, 예산집행 결과 등

※ 이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요청하는 사업점검에 필요한 기타 사항

10. 중간평가

○ 중간평가(사업 진행 여부 판단) 방법(안)

서류제출	점수산출	진행여부 결정
- 선정기업→사경원 서류 제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항목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60점 이상 : 사업계속 진행 -60점 미만 : 협약 중단

○ 판단 기준 자료: 월별·중간보고 및 붙임 서류 일체

○ 평가 기준(안)

① **목표 달성**: 사업계획 대비 정량·정성 목표 달성

평가기준	평가	구간	배점
목표 대비 달성률	우수	100% 이하 ~ 90% 이상	50
	양호	90% 미만 ~ 80% 이상	40
	보통	80% 미만 ~ 70% 이상	30
	미흡	70% 미만 ~ 60% 이상	20
	매우 미흡	60% 미만	10

② **예산 집행**: 교부된 사업비의 예산계획 대비 집행률 등

평가기준	평가	구간	배점
예산집행계획 대비 집행률	우수	100% 이하 ~ 90% 이상	30
	양호	90% 미만 ~ 80% 이상	25
	보통	80% 미만 ~ 70% 이상	20
	미흡	70% 미만 ~ 60% 이상	10
	매우 미흡	60% 미만	5

③ **자료제출**: 월간·중간보고서, 별첨 자료 및 지출결의

평가	평가기준	배점
우수	지각제출 0건	20
양호	경미한 지각제출 5건 이하	15
보통	경미한 지각제출 10건 이하	10
미흡	경미한 지각제출 10건 이하 또는 심각한 지각제출 3건 이하	7
매우 미흡	경미한 지각제출 10건 이상 또는 심각한 지각제출 3건 이상	5

※경미한 지각제출: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심각한 지각제출: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지각 제출의 경우, 지각 일수 및 횟수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11. 최종평가

○ 최종평가 절차(안)

서류제출	점수산출	최종평가
- 선정기업→사경원 서류 제출	·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항목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 최종평가 결과 공지(개별공문)

○ 판단 기준 자료

- 최종사업결과보고 및 붙임 서류 일체

○ 평가 기준(안)

① **목표 달성**: 사업계획 대비 정량·정성 목표 달성

평가기준	평가	구간	배점
목표 대비 달성률	우수	100% 이하 ~ 95% 이상	50
	양호	95% 미만 ~ 90% 이상	40
	보통	90% 미만 ~ 85% 이상	30
	미흡	85% 미만 ~ 80% 이상	20
	매우 미흡	80% 미만	10

② **예산 집행**: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률 및 집행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	구간	배점
월별 예산집행계획 대비 집행률	우수	100% 이하 ~ 95% 이상	30
	양호	95% 미만 ~ 90% 이상	25
	보통	90% 미만 ~ 85% 이상	20
	미흡	85% 미만 ~ 80% 이상	10
	매우 미흡	80% 미만	5

③ **자료제출**: 결과보고서 별첨 자료 및 증빙자료의 완성도

평가	평가기준	배점
우수	기한 내 제출	20
양호	근무일 기준 1일 지각 제출	15
보통	근무일 기준 2일 지각 제출	10
미흡	근무일 기준 3일 지각 제출	7
매우 미흡	근무일 기준 4일 이상 지각 제출	5

※ 상기 평가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평가 결과 '미흡' 시 차년도(2026년)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참여 불가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타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결과보고 제출기한)

- 1차 제출기한: 2025. 11. 10.(월)

※ 1차 제출 결과 검토 후 수정보완 제출

○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안)

연번	항목
①	사업결과보고서(양식 제공)
②	정산보고서(양식 제공)
	별첨 1. 회계장부(양식 제공)
	별첨 2. 통장입출금내역(실물통장 사본)
	별첨 3. 각 비목별 지출 증빙자료

※ 제출 내용은 선정 후 상세 안내하며,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3. 사업문의

○ 사회가치연계팀 김명섭 대리 ☎ 031-258-3249 / mskim@gsic.or.kr

별첨. 「2025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 끝.